

공 시 송 달 공 고

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『자연공원법』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,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,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. 2. 10.

광주광역시 동구청장



1. 제 목 :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17.2.10. ~ 2017.2.28.(18일간)
3. 송달대상 및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

성 명	주 소	위반일시	위반내용	관련법규	반송사유	체납액(원)
이*형	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로 100, ***동 ****호	2015.6.27	흡연행위	자연공원법 제29조 제1항	폐문부재	125,400
이*희	경북 영천시 창신1길 21, ***동 ****호	2016.2.15	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	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8호	폐문부재	115,800
신*호	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길5번길 1	2016.2.16	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	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8호	폐문부재	114,600
조*람	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봉로 110, **동 ***호	2016.7.30	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	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7호	폐문부재	54,900
나*진	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변영로14번길 16 *동 ***호	2016.8.7	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	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7호	폐문부재	54,900
박*수	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478	2016.8.13	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	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7호	주소불명	54,300
이*의	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동강로 495	2016.9.6	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	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7호	폐문부재	54,300

4. 기 타

가.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24조 및 『지방세기본법』 제91조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실시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체납액은 압류일 기준이며, 납부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5. 문의처 : 광주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 (☎ 062-608-2965)